

수신 : 행정안전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참조 : 개인정보보호과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천주교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2가 1-19)

담당 :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 2011 - 173호)에 대한 의견 표명

날짜 : 2011년 6월 15일

분량 : 표지포함 3매

1. 귀 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한 우리단체들의 의견 표명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 향후 법령 및 규칙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직인 생략)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희 (직인 생략)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직인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한 의견 표명

1.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관련(안 제23조 및 제24조)

- 안 제24조는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
- 제정안에 따른 대체수단으로는 현재 정부가 보급중인 아이핀이 채택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1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팀장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후속조치” 자료에서는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등] 의무화는 공포 후 1년 경과 이후 시행”이라고 명시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 워크샵 자료집).
-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기능, 정보의 집중 및 유출 우려 등을 지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 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안 제24조 2호를 삭제하거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게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가 보급중인 아이핀 역시 개인식별기능이 있으므로 안 제2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아이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관련(안 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력 파견 문제를 행정안전부 내부 협의에만 의해서 결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의도가 공표된 바 있음(위 워크샵 자료집 p49). 이는 위원회 독립성과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처럼 사실상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처럼 운영되는 과정에서 식물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제한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공무원 등이 파견될 경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관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관련(안 제26조)

- 안 제26조는 교도소, 정신보건소 등 구금·보호시설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구금·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목욕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입법취지와 배치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험성이 큽니다.
-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8.05.29 선고. 2005헌마137 결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도 배치됨.
-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내 CCTV 설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이나 인건비의 절약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호시설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시설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
- 그러나 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구금보호시설의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 요청이 매우 큰 장소에 대하여도 별다른 제한없이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을 통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위험적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음.
- 따라서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대통령령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공백으로 두는 것이 법의 위헌성을 소극적으로나 해소하는 방법이라 할 것임. 최소한 제정안에서 열거한 보호시설내 CCTV 설치에 대하여 관계법률상 근거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행령안을 제정하지 않아야 할 것임. <끝>